

의안번호	2213521
의 퇴 인	한정애 의원
회 답 일	2026. 1. 21.
추계번호	25A5470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①정의로운 전환 기본계획(안 제8조)을 수립하고, ②정의로운 전환 지원기금의 기금운용위원회(안 제15조제5항), ③석탄화력 발전소 폐지지역별 지역 전환 협의체(안 제16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11억원(연평균 2억 2,000만원)으로 추계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 연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정의로운 전환 기본계획 수립 (안 제8조)	270	—	—	270	—	540	108
정의로운 전환 지원기금 기금운용위원회 설치·운영 (안 제15조제5항)	11	11	11	11	11	56	11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별 지역 전환 협의체 설치·운영 (안 제16조)	101	101	101	101	101	504	101
합계	382	112	112	382	112	1,100	220

주: 1.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2. 단수 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Ⅱ. 재정수반요인¹⁾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는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책과 연계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정의로운 전환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주민과의 협력을 통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회복과 재생을 촉진하여야 함(제2항) *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안 제2조제3호): 석탄화력발전소의 설계수명 기간²⁾이 만료되기 전에 운영을 중지하고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는 것 * 정의로운 전환(안 제2조제6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3호³⁾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안 제2조제4호): 석탄화력발전소가 소재하거나 소재하였던 지역 및 그 인접 지역으로서 해당 발전소의 폐지로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의무규정
2	안 제5조제3항 (석탄화력발전소조기 폐지 목표)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공공 부문이 소유·운영하는 석탄화력발전소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하여 현 발전용량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2035년까지 전면 폐지하여야 함. 정부는 이를 법적·재정적으로 지원·보장하고, 필요한 경우 민간부문보다 우선적으로 조기 폐지 일정을 이행하여야 함	의무규정

1) 정부조직 개편으로 동 법안의 소관 부처가 산업통상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소관 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변경되었으나, 이하에서는 의안 원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표시를 유지하는 것으로 함

2) 정부에 따르면 발전기의 설계수명에 대한 정부의 지침은 없으나, 발전사 자체지침에서는 일반적으로 석탄화력발전기의 설계수명을 30년으로 규정하고 노후 설비 리트로핏(Retrofit; 성능개선공사) 등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음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정의로운 전환”이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기업인 등을 보호하여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방향을 말한다.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3	안 제7조제2호 및 제4호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지원)	정부는 조기 폐지를 이행하는 발전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①사업전환을 위한 용자 및 세제 감면, ②기존 인프라 전환 활용 시 관련 개발부담 완화 등을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4	안 제8조 (기본계획 수립)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3년마다 정의로운 전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조기 폐지 일정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함(제1항) 기본계획은 ①지역경제 영향평가 및 지역재생 전략, ②대체산업 육성 및 기업 유치 계획, ③노동자 전환 지원 방안, ④주민 생활환경 개선 및 복리 증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제2항)	의무규정
5	안 제9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정 및 특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기 폐지 계획에 따라 폐지지역에는 관계 법률에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특례를 부여할 수 있음 1.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규제자유특구 ⁴⁾ ,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⁵⁾ , 「지역 산업 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⁶⁾ 의 우선 지정 2. 「국가재정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의 면제 3. 「지방교부세법」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지원 비율의 상향	재량규정

4) 규제자유특구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구역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구역을 말하며, 규제자유특구에서는 규제에 대한 허가 필요 여부 등의 확인(규제신속확인), 새로운 제품 등의 실증을 위한 특례(실증특례) 부여, 시장 출시 목적의 혁신사업 시행에 대한 임시허가 등을 받을 수 있음

5) 고용위기지역은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고용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을 말하며,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고용조정, 근로자의 실업 예방, 실업자의 재취업 촉진을 위한 사업 등이 지원됨

6)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의 주된 산업의 침체로 인하여 지역경제 여건이 현저하게 악화된 지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을 말하며,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소재 기업에 대한 자금 및 세제 지원 등이 실시됨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6	안 제10조 (고용안정지원 등)	정부는 폐지지역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19조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함	의무규정
7	안 제11조 (고용보조금의 지급 등)	정부는 폐지지역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폐지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음(제1항) 정부는 폐지지역의 사업자가 업종 전환, 경영합리화를 추진하여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거나 새로운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업종 전환 또는 경영합리화에 필요한 시설 및 운전자금 또는 임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8	안 제12조 (대체산업의 육성)	정부는 폐지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하여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해당 대체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1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체산업사업자가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또는 지역주민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음(제2항) * 대체산업(안 제2조제7호): 석탄화력발전산업을 대체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주민의 소득을 증대하거나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	재량규정
9	안 제13조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 의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 ⁷⁾ 에 따른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봄	의무규정

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등)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이하 “특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급격한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침체,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고용 환경이 크게 변화되었거나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사회적·경제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거나 변화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
 - 그 밖에 위원회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구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② 정부는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포함하는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기업 및 소상공인의 고용안정 및 연구개발, 사업화, 국내 판매 및 수출 지원
 - 실업 예방, 실업자의 생계 유지 및 재취업 촉진 지원
 - 새로운 산업의 육성 및 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
 - 고용촉진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
 - 그 밖에 산업 및 고용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상·금융상 지원 조치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세제상의 지원 조치 (이하 생략)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0	안 제14조 (정의로운 전환 지원기금 설치)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고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지역 주민의 생활 향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의로운 전환 지원기금을 설치(제1항) 기금은 일반회계·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기후대응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정부의 출연금, 조기 폐지 발전사업자의 자발적 기여금 등으로 조성(제2항) 지원기금을 지출할 때 자금 부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지원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다른 기금과 그 밖의 재원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음(제3항)	의무규정
	안 제15조 (지원기금의 사용 및 관리)	지원기금은 ①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를 위한 지원사업, ②석탄화력발전산업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③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대체산업 육성 및 기업 유치사업, ④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주민의 생활 향상 지원사업 등에 사용(제1항) 지원기금은 해당 사업의 성격에 따라 보조금, 융자, 출자 또는 민관 공동참여 방식 등으로 운용할 수 있음(제2항) 지원기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운용·관리하며,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제4항) 지원기금의 효율적 운용과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소속으로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를 둘 수 있음(제5항)	재량규정
11	안 제16조 (지역 전환 협의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폐지지역별로 지방자치단체, 주민대표, 발전사업자, 석탄화력발전산업 노동자 대표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 전환 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음. 협의체는 자문기구로서 지역 맞춤형 계획의 수립 지원과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기능을 수행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2	안 제18조 (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음(제1항)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권고·선언적 성격의 책무 규정으로 이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분을 추계하기 곤란하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2	안 제5조제3항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목표)	×	권고·선언적 성격의 책무 규정으로 이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분을 추계하기 곤란하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3	안 제7조제2호 및 제4호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지원)	×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를 이행하는 발전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전환을 위한 용자지원 및 세제 감면 등을 실시하고 기존 인프라 재사용에 따른 재정 지원을 실시하는 경우 국가 재정지출 증가 및 재정수입(조세수입) 감소가 수반될 수 있으나, 용자지원 대상 발전 사업자의 범위와 지원 요건, 세제 감면의 기준과 감면 범위 등을 알 수 없으므로 재정부담을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
4	안 제8조 (기본계획 수립)	○	—
5	안 제9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정 및 특례)	×	(제1호) 제정안의 우선 지정 근거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이 규제자유특구,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 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각 지역 또는 특구의 근거 법령에 따라 보조금 및 조세·부담금 감면 등이 지원될 것이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이 증가하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할 수 있음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이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분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별 특구 등의 지정 여부와 지정 개수, 특구 내 지원을 받을 기업 등의 수, 해당 기업 등에 지원될 재정사업의 종류나 재원 투입 규모 등에 따라 결정될 것이나, 현 시점에서 추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없으므로 재정부담 증가분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규제자유특구,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등 지원 제도는 [참고자료 1] 참고 * [참고자료 1] 특별지역 및 특구 등 지원 제도 현황 (규제자유특구,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6	안 제10조 (고용안정지원 등)	×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상담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 등을 실시하는 경우 국가재정 지출이 증가할 수 있으나,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지로 인하여 퇴직, 재취업 또는 역량 개발의 대상이 될 노동자의 수와 사업대상자의 재취업기간 등을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없어 확대될 사업의 규모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7	안 제11조 (고용보조금의 지급 등)	×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우선 지급하고 업종 전환 또는 경영합리화에 필요한 시설·운전자금 및 임금의 일부를 보조·융자하는 경우 국가재정 지출이 증가할 수 있으나, 기존 사업의 확대 규모나 신규 추진될 사업의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참고로, 고용노동부는 2026년 “산업·일자리 전환 채용장려금”을 신설하여 탄소중립 전환 관련 사업주가 폐쇄 예정인 석탄화력발전소 관련 근로자를 채용한 후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채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음 * [참고자료 2] 고용노동부 산업·일자리 전환 지원 현황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8	안 제12조 (대체산업의 육성)	×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국가재정 지출이 증가할 수 있으나, 안 제2조 제7호에 대체산업의 범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현 시점에서는 그 내용을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없고, 지원 사업의 범위와 정부의 재원 투입 계획 또한 알 수 없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9	안 제13조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 의제)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간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하여 고용안정 및 재취업 촉진 지원 사업, 신산업 투자 유치 사업 등이 시행될 수 있으므로 국가재정 지출이 증가할 수 있음 다만, 현재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없어 준용 가능한 기존 재정 투입 사례가 없는바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산출하기 곤란하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⁸⁾
10	안 제14조 (정의로운 전환 지원기금 설치)	○ (운용위) × (그 외 부분)	정부가 정의로운 전환 지원기금을 설치하면서 기존 사업 범위를 확대하거나 신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 지출이 증가할 수 있으나, 확대 또는 신규 추진될 사업의 예산 규모를 예측할 수 없어 재정지출 증가분을 추계하기 곤란하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안 제15조 (지원기금의 사용 및 관리)		정부가 안 제15조제4항에 따라 기금 운용·관리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인건비와 관리운영비 등을 지원하게 되므로 국가재정 지출이 증가할 수 있으나, 비용추계에 필요한 기금 사업의 예산 규모나 여유자금 운용 규모 등을 알 수 없어 필요인력의 수 등을 합리적으로 가정하기 곤란하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11	안 제16조 (지역 전환 협의체)	○	—

8) 정부는 “2026년 상반기 중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 고시 제정 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을 대상으로 특구 지정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2	안 제18조 (권한의 위임·위탁)	×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을 지방자치 단체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산업 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사무 위임 및 위탁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예산, 위탁사업비 예산 등이 편성되어 재정지출이 증가할 수 있으나, 비용추계에 필요한 위임·위탁 대상 사업의 내용과 난이도 등을 알 수 없어 필요인력의 수 등을 합리적으로 가정하기 곤란하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추계가 곤란하여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이외에, 본 추계에서는
 - ①정의로운 전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수립(안 제8조), ②정의로운 전환 지원기금의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운용위원회”) 설치·운영(안 제15조 제5항),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별 지역 전환 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 설치·운영(안 제16조)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
 - 제정안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 주체 및 기금운용위원회·지역협의체의 설치·운영 주체가 모두 정부이므로, 추계비용은 전액 국가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
- (안 제8조) 기본계획 수립 비용으로는 해당 계획을 수립하는 데 소요되는 연구용역비를 추계하며, 이외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0조⁹⁾에서는 국가 탄소중립

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0조(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정부는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을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국가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사항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면서 그 내용으로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정안에 따른 기본계획은 해당 계획과 수립 주기가 다르며 내용 또한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지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므로 각각 별도로 수립하는 것으로 함

-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는 산업통상부 및 타 부처가 기본계획 수립 시 수행한 연구용역의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
- 제정안은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칙¹⁰⁾을 고려하여 2027년부터 법률이 시행될 것으로 전제하고 추계기간 동안 시행 당해 연도인 2027년과 그로부터 3년 후인 2030년에 연구용역비가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 (안 제15조제5항) 기금운용위원회 설치·운영 비용으로는 소속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비용을 추계하며, 이외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수당 비용 지급 대상이 되는 위촉직 위원의 수는 7명, 회의 횟수는 연 4회로 가정하며, 수당 단가는 기획재정부의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¹¹⁾을 준용하여 40만원으로 가정
 - 제정안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 정수·구성 및 회의 횟수에 관한 사항을 알 수 없으므로, 타 부처 소관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회의 빈도를 참고하여 가정¹²⁾
 - *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의,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의 등
 -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공무원인 경우 자기소관 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만 위원회 참석비를 지급할 수 있으므로, 당연직 위원은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

10) 안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1)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 200,000원내(서면심사 150,000원내)에서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100,000원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교통비·식비·숙박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220목) 또는 일반수용비(210-01목)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 다만, 공무원인 경우 자기소관 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자기소관 사무는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중앙관서의 사무까지 포함한다.
- 또한,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현지조사·기술 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 계상된 예산액 범위 내에서 전문가 자문료 또는 국가업무 조력자 사례금 등을 일반수용비(210-01목)로 지급할 수 있다.

12) 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 사례

- 심의회의 위촉직 위원 수, 회의 횟수 및 수당 단가는 추계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안 제16조) 지역협의체 설치·운영 비용으로는 소속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비용을 추계하며, 이외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지역협의체의 경우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전환이 예정된 7개 시·군·구¹³⁾에 하나씩 설치되는 것으로 가정하며, 수당 비용 지급 대상이 되는 위촉직 위원의 수는 위원 정수 15명 중 9명, 회의 횟수와 수당 단가는 각각 연 4회 및 40만원으로 가정

- 안 제16조는 지역협의체 설치를 재량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 시점에서 지역별 설치 여부를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없으므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전환 계획이 수립된 모든 기초자치단체(7개 시·군·구)에 1개씩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

* [참고자료 3]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현황

* [참고자료 4]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전환 계획

- 위촉직 위원의 수는 유사한 성격을 가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의 사례¹⁴⁾를 참고하여 총 정수 15명 중 9명으로 가정

위원회명	위원정수(A+B)	당연직(A)	위촉직(B)	회의 개최실적(회)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	10	3	7	4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심의회	10	3	7	3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	20	10	10	8
공적자금상환기금운용심의회	9	5	4	3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위원회	15	7	8	2

주: 회의 개최실적은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의 실적
자료: 행정안전부, 「2025년 행정기관 위원회 현황」, 2025.8.

13) 인천광역시 옹진군,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충청남도 당진시·보령시·태안군, 경상남도 고성군·하동군

14)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지역위원회의 구성) ① 지역위원회(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 위원장(이하 “지역위원장”이라 한다)은 발전소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주변지역이 속한 선거구에서 선출된 「공직선거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 4명 이내. 다만, (...)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역위원회인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 중 1명을 추가할 수 있다.
2. 발전소에 근무하는 직원 중 해당 발전소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3.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4. 지역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지역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4명(...) 이내
5. 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4명(...) 이내

* 안 제16조에서 지역협의체의 참여 주체로 “석탄화력발전사업 노동자 대표”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준용하되 주민 대표 할당분 4명을 2명으로 나누어 노동자 대표 2명, 주민 대표 2명이 지역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으로 가정

- 회의 횟수의 경우 현 시점에서 알 수 없으므로 분기당 1회씩 연 4회 개최되는 것으로 가정

- 수당 단가는 상술한 기금운용위원회와 동일하게 40만원으로 가정

○ 지역협의체의 위촉직 위원 수, 회의 횟수 및 수당 단가는 추계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안 부칙에 따른 시행일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이므로,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정의로운 전환 기본계획 수립(안 제8조)

□ 기본계획 수립 비용은 유사 사례로서 최근 산업통상부 및 타 부처가 수행한 기본계획 수립 관련 연구용역의 평균 예산을 준용하여 산출하며, 추계기간(2027~2031년) 동안 국가재정으로 5억 4,000만원(연평균 1억 8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

○ 2027년 및 2030년에 각각 2억 7,000만원으로, 총 5억 4,000만원

[표 2]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사례

(단위: 백만원)

연구용역명	소관부처	실시연도	예산
제3차 무역구제진흥 기본계획 수립방안 연구	산업통상부	2020	80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	환경부	2020	460
평균			270

자료: 산업통상부

[표 3] 정의로운 전환 기본계획 수립 비용 추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정의로운 전환 기본계획 수립 (안 제8조)	270	-	-	270	-	540	10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정의로운 전환 지원기금 기금운용위원회 설치·운영(안 제15조제5항)

□ 기금운용위원회 설치·운영 비용은 위촉직 위원의 수에 회의 횟수와 수당 단가를 곱하여 산출하며,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국가재정으로 총 5,600만원(연평균 1,1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

○ 위촉직 위원 수(7명) × 회의 횟수(4회) × 수당 단가(40만원) = 연 1,100만원

[표 4] 정의로운 전환 지원기금 기금운용위원회 설치·운영 비용 추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정의로운 전환 지원기금 기금운용위원회 설치·운영 (안 제15조제5항)	11	11	11	11	11	56	1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별 지역 전환 협의체 설치·운영(안 제16조)

□ 지역협의체 설치·운영 비용은 위촉직 위원의 수에 회의 횟수와 수당 단가 및 협의체 수(시·군·구당 1개)를 곱하여 산출하며,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국가재정으로 총 5억 400만원(연평균 1억 1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

○ 위촉직 위원 수(9명) × 회의 횟수(4회) × 수당 단가(40만원) × 시·군·구 수(7개) = 연 1억 100만원

[표 5]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별 지역 전환 협의체 설치·운영 비용 추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별 지역 전환 협의체 설치·운영 (안 제16조)	101	101	101	101	101	504	10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기본계획 수립 및 기금운용위원회·지역협의체 설치·운영 비용은 유사한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실제 재정소요는 추계 결과와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김효진	권아영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효진	02-6788-4654	hjkim1991@assembly.go.kr

[참고자료 1] 특별지역 및 특구 등 지원 제도 현황

(규제자유특구,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규제자유특구 지원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① 메뉴판식 규제특례		· 기존 법령에 대한 규제특례를 발굴하여 지역특구법상 메뉴판식으로 열거하고 지역이 필요한 특례를 자율적으로 선택 * 「지역특구법」 제2장제2절 및 제3장제3절
②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i)기준·요건 등이 없거나, (ii)그 적용이 맞지 않거나, (iii)불가능한 경우 → 시장에서 테스트 허용 * 「지역특구법」 제86조
	임시허가	·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i)기준·요건 등이 없거나, (ii)그 적용이 맞지 않는 경우 → 시장 출시 허용과 동시에 법령개정 착수 * 「지역특구법」 제90조
	신속확인	· 규제의 유무가 불분명할 때 신청 → 30일 이내에 규제 유무를 회신하고, 만약 미회신시에는 ‘규제없음’으로 간주(시장출시 가능) * 「지역특구법」 제85조
③ 조세 및 부담금		· 부처협의를 통해 조세 및 부담금 감면 가능 <부담금> 1. 개발부담금 2. 농지보전부담금 3.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4. 대체초지조성비 5. 대체산림자원조성비 6. 생태계보전부담금 7. 공유수면의 점용료·사용료 8. 하천 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 * 「지역특구법」 제96조
④ 재정지원		· 부처협의를 통해 예산 범위 내 재정지원 가능 * 「지역특구법」 제97조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고용위기지역 지원 내용

구분		일반		고용위기지역
고용유지 지원금 (유급휴업· 휴직)	지원한도	1일 6.6만원		1일 7만원 (대규모기업 6.6만원)
	지원수준	우선지원대상기업: 휴업수당의 2/3 (대규모기업 1/2~2/3)		우선지원대상기업: 휴업수당의 9/10 (대규모기업 2/3~3/4)
고용유지 지원금 (무급휴직)	지원요건	-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 또는 피보험자 20% 이상 유급휴직 (3개월)		-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 또는 피보험자 20% 이상 유급휴직 (1개월)
직업훈련	사업주 훈련지원	지원 한도	납부보험료의 100% (우선지원대상기업 240%)	납부보험료의 130% (우선지원대상기업 300%)
		훈련비 지원 단가	우선지원대상기업 100% 1,000인 미만 60% 1,000인 이상 40%	우선지원대상기업 150% 1,000인 미만 100% 1,000인 이상 90%
		국민내일 배움카드	- 5년간 훈련비 300만원 지원 - 훈련비 자부담률 15~55%	- 5년간 훈련비 500만원 지원 - 훈련비 자부담률 0~20%
	훈련연장 급여요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 제1항 제1호~제4호 요건 모두 충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제1항제1호만 충족해도 가능
	생계비 대부한도	1명당 1천만원		1명당 2천만원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 채납시 연체금 징수 채납처분 집행유예 ×		납부기한 연장 (6개월) 채납시 연체금 미부과 채납처분 집행유예 ○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 채납처분 집행유예 ×		납부기한 연장 (3개월) 채납처분 집행유예 ○
고용보험 지연신고에 따른 사업주 과태료		부과 (1인당 3만원)		면제
국민취업지원제도Ⅱ		중위소득 100% 이하 참여		소득요건 면제
생활안정 자금융자	소득요건	(생활안정자금) 3인가구 중위소득 1/2 이하 (‘25년 월 252만 원)		융자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한시적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상환기간	최대 5년(거치 1년/상환 3~4년)		최대 8년(거치 1~3년/상환 3~5년)
	한도액	총 2,000만 원(2종류 이상 융자 시)		총 3,000만 원(2종류 이상 융자 시)
채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상환기간	최대 6년(거치 1년~2년/상환 3~4년)		최대 8년(거치 1~3년/상환 3~5년)
	한도액	1천만원		2천만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5인 이상 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 채 용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1인 이상 기업도 지원
고용촉진장려금		각 부처 운영 12개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만 지원가능		고용노동부 운영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까지 지원대상 확대 적용
지역고용촉진지원금		-		1년간 월임금 50%(대규모기업 1/3) 지원

자료: 고용노동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 내용

구분	주요 내용
❶ 지역산업위기대응 ※산업부	•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대상 이차보전(중소·중견) 및 기업지원, 인력양성
❷ 긴급경영안정자금 ※중기부	•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포함(대응특별지역피해요건 입증 제외) – 위기지역 소재 기업에는 ①경영애로 사유 발생이 의제되며, ②일정 규모 이상 피해 확인시 정책자금 지원(중소기업한도 10억원, 금리 3.64% / 소상공인 한도 7천만원, 금리 2.96%)
❸ 정책금융 ※금융위	• 정책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 신보·기보 우대보증 프로그램 지원(협력업체·소상공인)
❹ 보통교부세 ※행안부	• 기준재정수요액(보정수요액_고용감소지역) 반영
❺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할인 ※행안부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시 할인을 추가 지원
❻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산업부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보조비율 상향 등
❼ 국내복귀지원 ※산업부	• 국내복귀기업 투자·이전보조금 지원비율 가산 등
❽ 세제지원 ※기재부	• 금융채무 상환 등을 위한 자산 매각 과세이연 확대
❹ 관세청 ※관세청	관세청 세정지원(관세조사 유예(1년), 분할납부 등) 대상 포함
❿ 법인세·소득세 ※기재부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을 영위한 기업(3년이상, 중소2년)이 공장,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기간 확대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 신설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⓫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특례 ※기재부	•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액 공제를 중견기업까지 확대
⓬ 국세 ※기재부	• 국세 납부기한 연장(2년), 체납액 재산압류 및 매각 유예기간 연장(2년)
⓭ 공유수면 점·사용료 ※해수부	• 해수부 및 지자체(시·도 또는 시·군·구)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등을 받은 자에 대해 징수하는 점·사용료 감면
⓮ 취득세·재산세 ※행안부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감면
⓯ 사업재편 승인기업 ※산업부	• 상법 절차 간소화, 공정 거래법 규제유예, 자금, 고용 지원 등

자료: 산업통상부

[참고자료 2] 고용노동부 산업·일자리전환 지원 현황

2-1. 산업·일자리전환 훈련지원금

□ 사업 개요

-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관련 기업의 사업주가 직무 재배치 등을 위해 재배치(전환) 훈련 및 전직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지원

□ 지원대상 및 요건

- **(지원대상)** 저탄소·디지털 전환 관련 사업주(기업규모 무관)
- **(지원요건)** 탄소중립·디지털 전환에 따른 인력재배치 계획 수립 후 직무를 변경하여 재배치 예정인 근로자에게 직무훈련을 제공하거나 이·전직 예정인 근로자에게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시 지원

□ 예산: 927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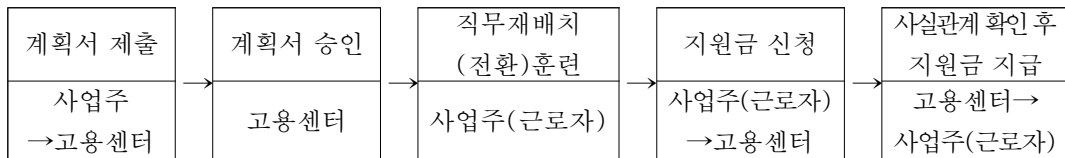
- 훈련비: 702백만원(390명×1.8백만원)
- 훈련장려금: 175백만원(350명×0.5백만원)
- 운영비: 50백만원

□ 지원내용

- 직무전환(전직지원서비스) 훈련비용 실비지원(인당 최대 180만원), 사업주 훈련장려금[인당 최대 50만원] 지원

□ 지원절차

- 고용센터에 사업참여 신청서 및 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 받은 후 직무전환 훈련 등을 이행한 후 지원금 신청·지급



2-2. 산업·일자리전환 채용장려금(신규)

□ 사업 개요

-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의 업무공백 최소화를 통해 사업주의 원활한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고 고용 창출·고용안정을 촉진

□ 지원대상 및 요건

- **(지원대상)** 탄소중립 전환 관련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단, 폐쇄 예정 석탄화력발전소 협력업체는 무관)
 - **(특례)** 폐쇄 예정 석탄화력발전소 관련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단, 화력발전업장 제외)
- **(지원요건)** 탄소중립 전환 관련 사업주가 근로자 신규채용 또는 퇴직자·퇴직예정자를 재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특례)** 폐쇄 예정일로부터 2년 이내 이·전직한 근로자 또는 폐쇄로 인해 계약종료·해고된 석탄화력 발전소 관련 근로자를 신규채용한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 예산: 1,130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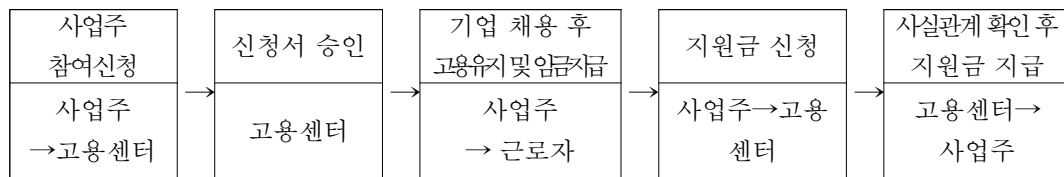
- 채용장려금 : 1,080백만원(300명×0.6백만원×6개월)
- 운영비: 50백만원

□ 지원내용

- 1인당 6개월 근무 시 반기별로 360만원 지원(단, 계속사업이며 특례 유형은 3년 한시사업으로 운영)

□ 지원절차

- 고용센터에 사업참여 신청서 및 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은 후 직무전환 훈련 등을 이행한 후 지원금 신청·지급



자료: 고용노동부

[참고자료 3]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현황

[단위: 용량(MW), 발전량(GWh)]

발전소명(지역)	대수	용량	호기	용량	준공	호기	용량	준공	발전량(2024)
삼천포화력(경남)	4	2,120	#3	560	'93	#5	500	'97	9,561
			#4	560	'94	#6	500	'98	
영흥화력(인천)	6	5,080	#1	800	'04	#4	870	'08	22,872
			#2	800	'04	#5	870	'14	
			#3	870	'08	#6	870	'14	
여수화력(전남)	2	669	#1	340	'16	#2	329	'11	2,794
보령화력(충남)	6	3,050	#3	550	'93	#6	500	'94	16,217
			#4	500	'93	#7	500	'08	
			#5	500	'93	#8	500	'08	
신보령화력(충남)	2	2,038	#1	1,019	'17	#2	1,019	'17	10,409
태안화력(충남)	9	5,600	#1	폐지	폐지	#6	500	'02	24,472
			#2	500	'95	#7	500	'07	
			#3	500	'97	#8	500	'07	
			#4	500	'97	#9	1,050	'16	
			#5	500	'01	#10	1,050	'17	
하동화력(경남)	8	4,000	#1	500	'97	#5	500	'00	19,116
			#2	500	'97	#6	500	'01	
			#3	500	'98	#7	500	'05	
			#4	500	'99	#8	500	'05	
삼척그린화력(강원)	2	2,044	#1	1,022	'16	#2	1,022	'17	3,176
당진화력(충남)	10	6,040	#1	500	'99	#6	500	'06	26,338
			#2	500	'99	#7	500	'07	
			#3	500	'00	#8	500	'07	
			#4	500	'01	#9	1,020	'16	
			#5	500	'05	#10	1,020	'16	
북평화력(강원)	2	1,190	#1	595	'17	#2	595	'17	2,835
고성(경남)	2	2,080	#1	1,040	'21	#2	1,040	'21	10,579
신서천(충남)	1	1,018	#1	1,018	'21				3,861
강릉안인(강원)	2	2,080	#1	1,040	'22	#2	1,040	'23	3,296
반월열병합*(경기)	1	83	#1	83	'90				374
대구염색열병합*(대구)	1	73	#1	73	'04				0.5
SGC에너지*(전북)	1	114	#1	114	'08				664
새만금열병합*(전북)	2	303	#1	152	'15	#2	152	'15	2,340
금호여수열병합*(전남)	2	264	#1	119	'09	#2	145	'16	1,664
여수열병합*(전남)	1	48	#1	48	'10				301
구미열병합*(경북)	1	97	#1	97	'91				567
부산염색열병합*(부산)	1	19	#1	19	'93				12
김천열병합*(경북)	1	59	#1	59	'13				384
전북집단지너지*(전북)	1	19	#1	21	'92				107
상공에너지*(전북)	1	10	#1	10	'12				42
포천그린에너지*(경기)	1	170	#1	170	'18				1,313
동해화력(무)(강원)	2	400	#1	200	'98	#2	200	'99	1,991
삼척화력(강원)	2	1,050	#1	1,050	'24	#2	1,050	'25	4,225

주: *는 비중양급전(14대/1,259.2MW), (무)는 무연탄(2대/400MW), 삼척#2 시운전 발전량 포함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참고자료 4]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전환 계획

연도	발전기(대체부지)		비고
2025	태안#1(구미)	1기	11차 전기본 기준 (LNG전환)
2026	하동#1(안동), 보령#5(보령), 태안#2(공주)	3기	
2027	삼천포#3,4(고성), 보령#6(함안), 하동#2,3(하동)	5기	
2028	삼천포#5(화성), 태안#3(여수), 하동#4(고양)	3기	
2029	동해#1,2(동해), 삼천포#6(천안), 태안#4(아산), 당진#1,2(울산)	6기	
2030	당진#3,4(용인)	2기	
2031	하동#5,6(용인)	2기	
2032	태안#5,6(용인)	2기	
2033	—	—	
2034	영흥#1,2(인천)	2기	
2035	—	—	11차 전기본 기준 (무탄소전환)
2036	당진#5,6(미정)	2기	
2037	당진#7,8(곡성양수, 미정), 태안#7,8(미정)	4기	
2038	보령#3,4,7,8(봉화양수 등), 영흥#3(금산양수 등), 하동#7,8(미정)	5기	

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기준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